



제268회(임시회) 제4차 본회의
2008년 3월 14일 (금)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 청 북 도 의 회
교육사회위원회

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8. 3. 14.
교육사회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8년 2월 21일
충청북도교육감

나. 회 부 일 자 : 2008년 2월 2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2008. 3. 4 제268회 충청북도의회(임시회)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상정
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질의·토론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 : 김종근 교육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교육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 시기를 조정하고,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 또는 조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내용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‘매년 9월 임시회에서 5일 이내 실시’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감사 실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
(안 제2조제2항)
- 정당한 이유없이 감사 또는 조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근거 마련.
(안 제8조의2)
- 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을 위한 근거 마련. (안 제8조의3)

Ⅲ. 검토보고 요지

(교육사회전문위원 이명우)

가. 조례안의 개정 이유

- 동 조례안은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」 부칙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서,
- 충청북도 교육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매년 10월 정기 회기 내 실시하던 것을 9월 임시회에 실시하여 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감사기간을 조정하는 것이며, 「지방자치법」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내용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동 조례안을 정비 하려는 것임.

나.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에 대해

- 현행 교육청 조례에 의하면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 5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개정 조례안에서는

매년 9월 임시회에서 5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관계법령에 의하면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16조는 자치단체의 사무감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차 또는 2차 정례회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시행령」 제14조에는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을 준용하고 있음.
- 그러나,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제14조에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16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는데, 동 조례안의 감사실시 시기를 정기회에서 임시회로 변경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법률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따라서, 동 조례안의 감사시기를 정기회에서 임시회로 조정하는 것은 그동안 정례회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문제점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여 10월 정기회 예산안 심사 시 적정히 반영하기 위함이며, 타 시·도 교육위원회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점차 정례회에서 임시회기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추세에 있으므로, 동 조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<행정사무감사 시기 관련 참고자료>

□ 시·도 교육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		
시도별	정례회기 실시	임시회기 실시
서울	· 2차 정례회 전에 5일 이내	-
전남, 경남	· 1차 정례회 기간중 5일 이내	· 전남, 경남 6월(1차정례회)
경북, 광주, 울산, 충남	· 정례회 기간중 5일 이내	-
충북, 경기, 부산, 대구, 대전	· 정기회 기간중 5일 이내	-
전북, 강원	-	· 6월 임시회 기간중 5일 이내
인천	-	· 정기회 직전의 임시회시 5일 이내
□ 관계법령		
○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(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)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실시한다.<개정 1994.7.6, 1999.12.31, 2000.7.1>		
○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(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의 준용 <개정 2005.3.31>)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15조 내지 제15조의5, 제17조의2, 제17조의4 내지 제19조, 제19조의3, 제20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감사 또는 조사위원회"는 "소위원회"로, "지방의회" 또는 "본회의"는 "교육위원회"로, "의원"은 "위원"으로, "지방자치단체의장"은 "교육감"으로, "행정자치부장관"은 "교육인적자원부장관"으로 본다. <개정 1992.3.25, 2000.2.28, 2001.1.29, 2005.3.31, 2006.2.8>		

※ 정례회 : 1차(6월), 2차(10월)

다. 과태료 부과기준 및 실비변상에 대해

-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감사 또는 조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.

<타 시도 교육위원회 사례>

- 15개 시·도교육위원회(제주특별자치도 제외) 중
 - 서울시교육위원회와 전남도교육위원회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V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VII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IX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”를 “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9조(지방자치법 제36조 준용) 및 동법시행령 제12조”를 “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부칙 제2조”로 한다.

제2조제2항중 “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 5일이내”를 “감사는 매년 9월 임시회에서 5일이내”로 한다.

제5조중 “지방자치법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”으로 한다.

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과태료의 부과기준) ①정당한 이유없이 감사 또는 조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
②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이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 사실통보 등에 의하여 교육감이 부과 징수한다.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③교육감은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8조의3(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) ①위원회에서 증언·진술하는 증인·참고인이 방송·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·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위원회에서 증언·진술한 증인·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.

③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·진술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「공무원여비규정」 별표 2의 제2호 기준을 준용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중 "위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(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6 및 제17조의7 준용) 규정에 의한"을 "위원이"로 하고, "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"을 "「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」"으로 한다.

제14조중 "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"을 "「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」"으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19조(지방자치법 제32조 준용)"를 "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2조"로 한다.

②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"를 『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』로 한다.

제1조중 "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9조(지방자치법

제37조의 준용)"를 "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부칙 제2조"로 한다.

③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17조"를 "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2조"로 한다.

[별표]

과태료 부과기준(제8조의2제1항 관련)

(단위 : 만원)

부 과 대 상	과 태 료	비 고
1.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		
○ 당해감사 또는 조사시 출석거부 3회이상	500	
○ 당해감사 또는 조사시 출석거부 2회	200	
○ 당해감사 또는 조사시 출석거부 1회	100	
2.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		
○ 당해감사 또는 조사시 증언거부	50	

현행	개정안
<p><신설></p>	<p>제8조의2(과태료의 부과기준) ①정당한 이유없이 감사 또는 조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</p> <p>②제1항 과태료는 의장이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 사실통보 등에 의하여 교육감이 부과 징수한다.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③교육감은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제8조의3(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) ①위원회에서 증언·진술하는 증인·참고인이 방송·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·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3조(징계)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위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(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6 및 제17조의7 준용)규정에 의한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</p>	<p>②위원회에서 증언·진술한 증인·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.</p> <p>③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·진술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「공무원여비규정」 별표 2의 제2호 기준을 준용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13조(징계)..... 위원이 「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」..... 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부칙 제2조 (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은 교육위원 임기만료일인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(2006. 2. 8. 대통령령 제19322호)

제14조 (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의 준용<개정 2005.3.31>)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15조 내지 제15조의5, 제17조의2, 제17조의4 내지 제19조, 제19조의3, 제20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감사 또는 조사위원회"는 "소위원회"로, "지방의회" 또는 "본회의"는 "교육위원회"로, "의원"은 "위원"으로, "지방자치단체의 장"은 "교육감"으로, "행정자치부장관"은 "교육인적자원부장관"으로 본다.